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중 '제4장 학위논문' 발췌본

2021.03.01자 시행세칙

## 제 4 장 학위논문

(중략)

### 제 2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 제4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② 군복무(의무복무)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 및 연수,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연구지도” 학점을 수업연한 중 매학기 2학점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기의 지도학점은 제외한다.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24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6.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7.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5조 2항에 의거하여 논문심사를 대체하는 경우, 연구지도 학점을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으로 연구지도 학점을 대체하는 학과 현황은 <표 2>와 같다.
- ③ 학사관리주관대학이 세종캠퍼스 소속인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일반공통 필수교과목 중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 2. “연구지도” 학점을 수업연한 중 매학기 2학점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기의 지도학점은 제외한다.
  -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30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6.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 7.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 8.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 ② 학사관리주관대학이 세종캠퍼스 소속인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일반공통 필수교과목 중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의2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 ①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 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 요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각 학과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학사위원회 또는 학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46조(의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의학과는 논문제출 예정 학기보다 적어도 1학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논문 예비발표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용 논문(가제본)

1. 석사 3부(학·연·산협동과정 4부)

2. 박사 5부(학·연·산협동과정 6부)

② 제출서류

1. 석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나)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 다)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 라)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 마)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 2. 박사학위

-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나)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 다)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
- 라)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 마)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 바)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제49조(심사용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50조(심사용 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1조(심사용 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제52조(논문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위촉한다.
-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

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교내 타학과 포함)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④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속대학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⑥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53조(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1회 에 한하여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3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속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8조(완제본 논문의 용어)

-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과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 제60조(완제본 논문의 제본 및 제출)

-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 ② 완제본 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의학계는 4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의학계는 제외)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제61조(완제본 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 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62조(완제본 논문의 장정)** 완제본 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및 작성은 별지의 “학위논문 작성 규격”에 따른다.

### 제63조(완제본 논문 활자)

-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 ② 학교명칭(高麗大學校 大學院.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등)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 ③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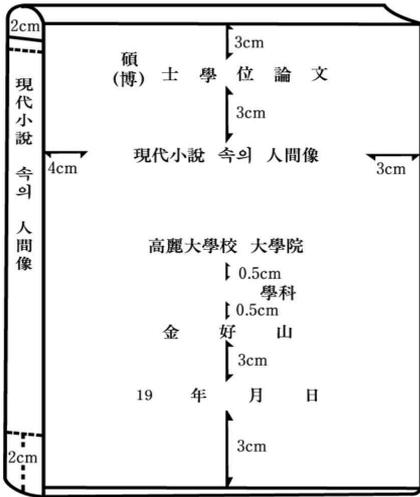
**제64조(완제본 논문 양식의 차례)** 별첨한 <학위논문 작성 규격>을 참조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표지에는 [별지서식 3] 또는 [별지서식 4]가 온다.
2. 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별지서식 5]의 속표지가 오게 한다.
3. 속표지 다음 장에 [별지서식 6]의 심사완료 검인서가 온다. 검인서는 2부(의학과는 3부)만 인쇄한다.
4. 검인서 다음에 [별지서식 7]의 논문목차가 온다.
5. 논문목차 다음에 다시 백색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별지서식 8]과 같이 본문 차례가 시작되며,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한다.
6. 본문이 끝나면 백색 표지를 한 장 삽입하고 참고자료를 붙인다. 참고자료는 부록, 참고문헌, 색인의 순서로 한다.
7. [별지서식 9]와 같이 외국어초록(해당자만)을 붙인다.

< 학위논문 작성 규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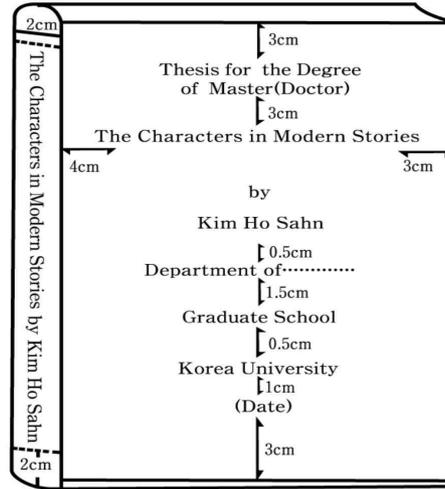
[별지서식 3]

국문 표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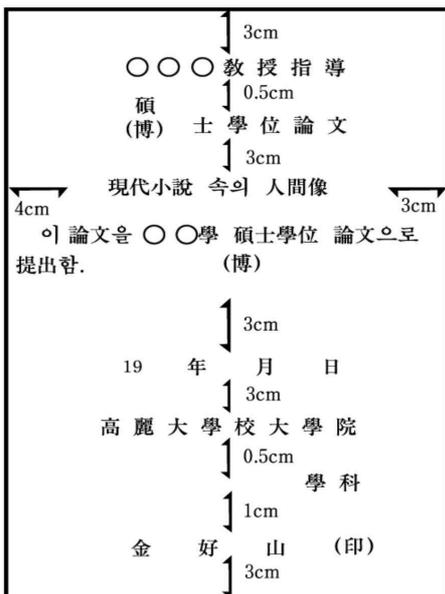
[별지서식 4]

영문 표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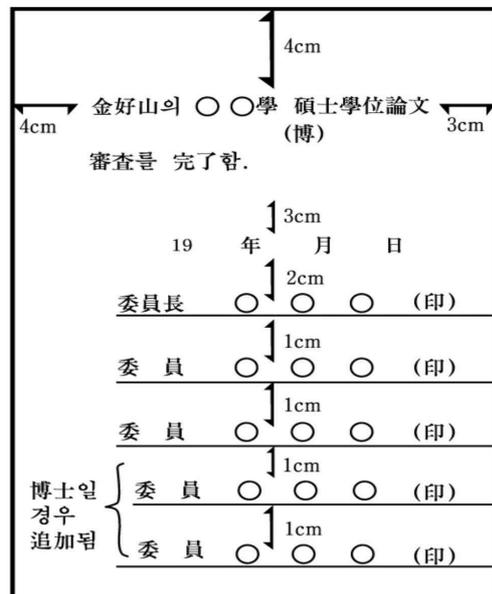
[별지서식 5]

속 표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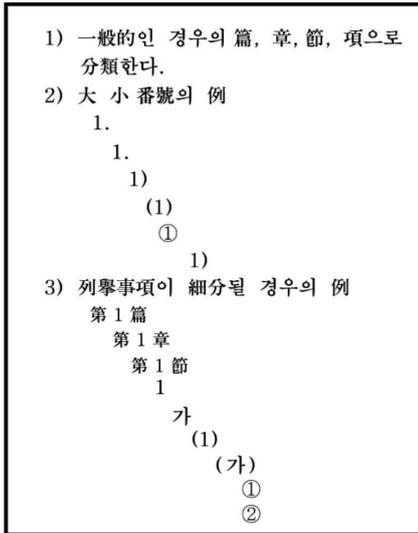
[별지서식 6]

심사완료 검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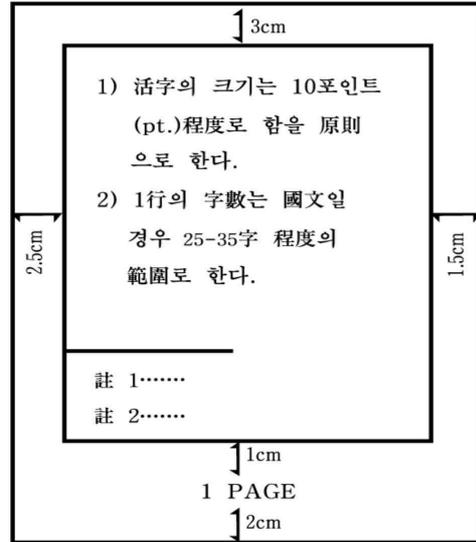
[별지서식 7]

목차 기호 양식



[별지서식 8]

내지(본문) 양식



[별지서식 9]

외국어초록 양식

Title of Thesis

Name :

Department :

Thesis Advisor :

Content

-----

-----

-----

-----

-----